

■ 최신 판례 ■

[노동] 복수노조제 하에서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무효이다

김성수 변호사 | 강재영 변호사

1. 사실관계

-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하 '항운노조연맹')은 항만·철도·육상 등 각 분야의 하역 및 운송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이고, 한국항만운송협회(이하 '항만운송협회')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업 등록을 한 하역사업주를 회원으로 하는 사용자 단체이다.
- 항운노조연맹은 1981년경부터 항만운송협회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0년 6월 1일에 체결한 2010년도 단체협약 제3조는 '유일교섭단체'라는 표제하에 "항만운송협회는 위 협회의 회원사를 대표하고 항운노조연맹은 단위노동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들은 항운노조연맹을 탈퇴하여 지역별 노동조합을 설립한 자들이다.

2. 판결의 요지

이 사건단체협약 제3조는 항만운송협회 또는 그 협회 소속 회원사가 원고와 사이의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강행법규인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81조 제3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판결의 의의

2010년 1월 1일에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5조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노동조합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은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설립할 수 없고 2011년 7년 1일부터는 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수노조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실무상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고, 유일교섭단체 조항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노조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해석론이 유지될 것인지에 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복수노조제가 시행된 이상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판례는 복수노조제 시행 이후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4. 다운로드 : [대구지방법원 2012. 7. 4. 선고2011구합3847 판결](#)